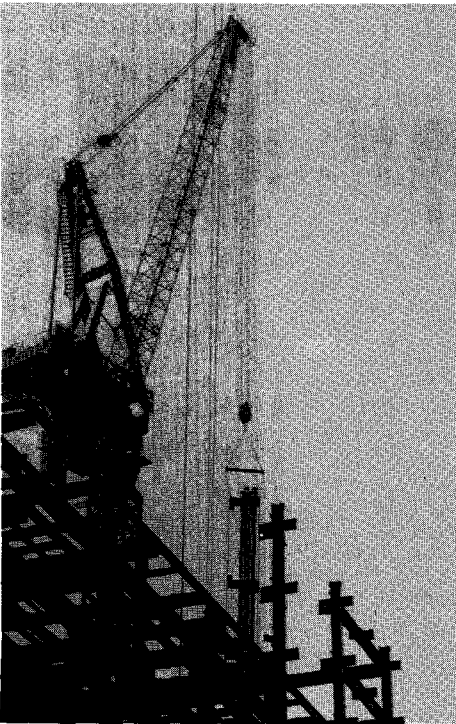


설비공사 有感

박종호 / 대한주택공사 기계건설부장



최근들어 성수대교 사건등을 비롯하여 각종 매스컴에서 '부실공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과 귀를 멍들게 할 정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국가의 총체적인 '부실공포증'에 시달리다 못해 하루하루 지내기조차 두려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 시대에 모든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하던 것만을 능사로 알았던, 지나간 시대의 유산이 아닐듯 싶다.

그러나 우리 건설업계는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잘못된 사고방식은 과감히 뜯어 고쳐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는, 건설업계의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건설업계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와같은 사고에 대해 뼈아픈 책임을 통감하며, 최근 주택공사 입찰에서 빚어지고 있는 설비공사의 입찰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에 대하여 월간 '설비공사'의 지면을 통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설비공사의 입찰방법은 정부 예산회계법상에서 전문공사인 경우 10억 이상은 최저가 낙찰제이고, 10억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로서 예정가격의 85%에 가장 근접한 금액이 낙찰되는 방법등 예정가에 따라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최근

“
**설비업계의 위상은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
 해 주지 않으며 업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있을 때 그 대가는 반
 드시 주어질 것이다.**
 ”

최저가를 낙찰자로 정하는 10억 이상의 공사 입찰결과를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업체의 당연한 권리일 것이며 또 업체는 그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면 당연히 그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업체의 당연한 책무이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한 예를 가끔 보여준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성격, 공사비등을 분석하여 나름대로 판단한 다음 입찰에 참가해야지 공사가 어찌되든 우선 입찰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일부 업체는 최저가에 낙찰(70% 이하)을 받아 놓고 회계법상 규정된 예정가의 85%까지의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바, 이는 설비업계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먹구구식 업체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입찰전에 이루어지는 현장설명시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는 그 공사의 조건 및 특성, 설비시스템, 도면, 시방서, 공사환경 등을 현장설명시 검토하여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현행 입찰제도에서 강제조항을 두지 않아서 그런지 현장설명시에는 참석하는 업체가 보기 드

물 뿐만 아니라 더러는 아예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업체는 물론 설비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실추와 더불어 당해 공사의 공정 지연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쫓기는 공정에서 부실시공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건의 공사에 몇차례의 재입찰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계약포기 사태가 발생된다면 결국 설비공사업체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업계에서는 10억 이상의 공사도 10억 미만과 같이 제한적 최저낙찰 방법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는 현행 예산회계법의 개정 없이 불가능한 사항(최근들어 예산회계법 개정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지만)이므로 현행법을 타리 안에서 양질의 시공을 통한 적정한 이윤이 추구될 수 있는 범위에서 낙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비업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설비업계의 위상은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 해 주지 않으며 업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있을 때 그 대가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실시공이라는 말이 떠올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건설풍토를 쇄신하여 나가자.